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29.

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

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1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##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).

#### 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지방자 치법」이 2007. 5. 11일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,
- 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, '시·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·도의 일반 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'하도록 규정됨에 따라

○ 2007년도에는 102억원의 시 예산이 학교용지매입비로 지원되고,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총 2,349억원의 시 예산이 학교용지매입비로 지원되어져야 할 형편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현재 50%를 부담하는 시 재정을 25%로 하향 조정하는 법개정건의나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